

# 미래에셋증권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 약관

제정 2021. 06. 01.

개정 2023. 10. 12.

## 제 1 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미래에셋증권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이하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 ①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이란 계약 기간을 정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고객이 정한 외화 금액을 입금하여 그 입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외화 발행어음을 매수하여 적립되는 발행어음을 말한다.
- ② "월 적립금액"이란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외화 발행어음에 투자되는 외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객은 계약 체결 시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월 외화 적립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수익률"이라 함은 고객이 외화 발행어음을 매매함에 있어, 회사가 만기 또는 중도 상환 시 고객에게 원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 대비 수익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④ "정기자동매수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지정한 회사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월 적립금액만큼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을 매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⑤ "자동환전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지정한 회사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외화 약정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고객이 지정한 통화로 자동으로 환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 3 조(거래성립 등)

- ①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을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고객명의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 외화 자금을 입금한 후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 매수를 신청하면, 회사는 총 한도내에서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을 발행하여 해당 발행어음의 발행금액, 발행일, 만기일, 약정수익률을 전산원장에 기록함으로써

써 거래가 성립한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고객에게 별도의 실물은 교부하지 않으며, 제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산원장에 당해 발행어음 상세정보를 기록함으로써 발행 및 교부한 것으로 한다.

#### 제 4 조 (가입금액)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의 최소가입금액 및 가입한도에 대해서는 회사가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른다.

#### 제 5 조 (최장발행기간 및 약정기간)

①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의 최장발행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르며,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약정기간을 선택하거나 그 범위 내에서 약정만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의 약정만기일이 도래한 때 당해 외화 발행어음은 계좌에 현금지급된다. 약정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계좌에 현금지급된다.

#### 제 6 조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의 내용)

회사와 고객간에 거래하는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객은 계약기간 동안 영업점, 홈페이지, 정기자동매수서비스, 자동환전서비스 등을 통하여 월 적립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

② 정기자동매수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지정매수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의 자동매수시 출금계좌의 잔고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익영업일에 자동매수를 다시 실행한다. 익영업일에도 자동매수시 출금계좌의 잔고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은 매수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고객이 최초 약정 당일 고지된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 수익률을 고객의 계약기간 중 투자되는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며 고객은 계약체결 이후 적립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 할 수 없다.

④ 자동환전 서비스는 회사가 약정일 당일 제공하는 결제환율을 적용하여 자동매수 실행 전에 자

동환전을 실행하며, 자동환전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이 때 적용되는 수수료는 회사에서 사전에 고시한 수수료율을 따른다.

⑤ 자동매수 실행 후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매수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잔존한 외화 금액을 원화로 재환전하지 않으며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등의 투자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7 조(약정수익금의 지급)

① 수익금 지급 방법은 만기일시지급식이며, 회사는 만기일에 계약기간 동안 투자 되었던 각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을 각각의 투자기간에 따라 고지된 만기수익률을 적용하여 상환한다. 이 경우 일수 산정은 각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의 매수일부터 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다. 다만, 수익금액을 원화로 환산(만기일 또는 중도상환일의 매매기준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므로, 일부 지급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③ 약정수익금 산정시 최소매매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최소 매매단위는 별첨에서 정하는 통화별 기준에 따른다.

#### 제 8 조(중도상환)

① 고객이 만기일 전에 어음의 상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어음을 전액상환하여 만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약정한 수익률과는 별도로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중도상환 수익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차감한다. 다만, 수익금을 원화로 환산(만기일 또는 중도인출일의 매매기준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므로, 일부 지급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③ 약정수익금 산정시 최소매매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최소 매매단위는 별첨에서 정하는 통화별 기준에 따른다.

#### 제 9 조(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고객은 적립식 외화 발행어음을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없다.

#### 제 10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1 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

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제 12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 13 조(관할법원)

- ① 발행어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14 조(관계법규 등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관 또는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그 밖에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될 회사의 다른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적용된다.

이 약관은 202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통화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USD: 매매 단위 0.01\$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